

기업부설연구소 안내문(2024-003)

배포 2024. 3. 22.(금) 17:00

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부당청구 사례 안내

방문요양 및 방문목욕의 부당 청구 사례입니다. 부당 청구는 금전적인 피해는 물론, 행정처분을 당할 수 있습니다. 사례를 참고하시어 부당 청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부탁드립니다.

○ 부당청구 사례

대분류	소분류	사례
거 짓 청 구	당월 서비스 미제공	-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서비스를 이용한 것처럼 청구함
	서비스를 횡수를 거짓으로 늘림	- 실제로 주 3회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주 5회로 늘려 서비스를 청구함 - 요양보호사의 휴가로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였으나 서비스를 제공한 것 같이 청구하였음 - 목욕의자만 제공한 후, 이동변기, 목욕의자를 제공한 것으로 품목을 늘려 청구
	서비스 시간을 늘려 청구	- 방문요양서비스를 하루 180분 제공하였음에도 240분 제공한 것으로 청구 - 240분 서비스 중 180분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60분은 요양보호사 개인 업무를 본 경우
	실제 제공한 급여종류와 다르게 청구	-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청구
	가족인 요양보호사 제공 후 타인에게 청구	- 동거하는 가족이나 비동거 가족이 방문요양서비스를 60분 제공하고 일반요양보호사가 240분 제공한 것처럼 청구
	무자격자가 서비스 제공 후 타인으로 청구	-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후 지자체에 등록한 자격 있는 요양보호사 명의로 청구
	미신고자가 서비스 제공 후 타인으로 청구	- 요양보호사가 자격증이 있으나 해당기관 종사자로 미신고된 경우,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 후 해당기관 등록되어 있는 요양보호사 명의로 청구 - 청구된 서비스 일자 중 일부 기간이 해당기관 청구 종사자로 신고되지 않은 상태로 제공된 경우
	인력배치 위반 청구	- 가산 사회복지사를 허위로 등록하여 실제 근무하지 않았으나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 근무한 것으로 신고하고 청구

대분류	소분류	사례
거 짓 청 구	당월 서비스 미제공	-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서비스를 이용한 것처럼 청구함
	서비스를 횡수를 거짓으로 늘림	- 실제로 주 3회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주 5회로 늘려 서비스를 청구함 - 요양보호사의 휴가로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였으나 서비스를 제공한 것 같이 청구하였음 - 목욕의자만 제공한 후, 이동변기, 목욕의자를 제공한 것으로 품목을 늘려 청구
	서비스 시간을 늘려 청구	- 방문요양서비스를 하루 180분 제공하였음에도 240분 제공한 것으로 청구 - 240분 서비스 중 180분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60분은 요양보호사 개인 업무를 본 경우
	실제 제공한 급여종류와 다르게 청구	-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청구
	가족인 요양보호사 제공 후 타인에게 청구	- 동거하는 가족이나 비동거 가족이 방문요양서비스를 60분 제공하고 일반요양보호사가 240분 제공한 것처럼 청구
	무자격자가 서비스 제공 후 타인으로 청구	-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후 지자체에 등록한 자격 있는 요양보호사 명의로 청구
	미신고자가 서비스 제공 후 타인으로 청구	- 요양보호사가 자격증이 있으나 해당기관 종사자로 미신고된 경우,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 후 해당기관 등록되어 있는 요양보호사 명의로 청구 - 청구된 서비스 일자 중 일부 기간이 해당기관 청구 종사자로 신고되지 않은 상태로 제공된 경우
산 정 기 준 위 반	인력배치 위반 청구	- 가산 사회복지사를 허위로 등록하여 실제 근무하지 않았으나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 근무한 것으로 신고하고 청구
	야간, 심야, 공휴일 서비스 가산 위반 방문목욕 수가 산정 기준위반	- 낮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야간에 제공한 것처럼 청구하여 야간 가산을 청구 - 요양보호사 1인이 혼자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하고 2인이 서비스한 것처럼 청구 - 요양보호사 2인이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, 몸 씻기, 이동 보조 과정에서 1인만이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※ 몸 씻기뿐만 아니라 이동보조도 2인이 제공해야 함(관련근거 : 고시 24조 2항)

대분류	소분류	사례
산 정 기 준 위 반	정서지원서비스기준위반	- 정서지원 서비스를 60분 이상 제공하고 60분만 제공한 것으로 청구 ※ 관련근거 : 고시 17조 3항
	연속급여제공기준 위반	- 한번 방문하여 서비스를 연속하여 제공하였으나 2번 방문한 것으로 청구 - 방문 간격이 2시간 미만이나 2번 방문한 것으로 급여비용 청구
	동일 수급자에게 동일시간대 서비스 중복 제공	- 방문요양과 방문목욕 서비스 시간에 실제 중복하였으나 각각 다른 시간에 제공한 것으로 청구
	가족인 요양보호사 직업 에 종사하면서 서비스 제공 후 청구	-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직장(상근 160시간)에 근무하면서 서비스 제공 후 청구 ※ 요양 159시간 + 가족요양 20시간 = 환수 없음 ※ 요양 160시간 + 가족요양 20시간 = 환수 발생
	방문요양 급여 제공기준 위반	- 요양보호사가 수급자가 입원 병원(병실)에서 재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청구 - 수급자 병원동행 중 투석치료를 받는 시간까지 포함하여 방문요양을 청구함(※ 일반진료는 포함 가능) - 수급자 가정이 아닌 미인가 시설에서 재가급여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정에서 제공한 것으로 청구
	배상책임보험 가입기준 위반	- 전문인배상책임 보험이 아닌 영업 배상 책임을 가입한 경우 - 전문인배상책임 보험이 가입자 범위 이하일 때
	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 청구 (겸직직종 및 고유업무 외 다른업무 수행)	- 방문요양기관에 사회복지사를 추가 배치하였으나 수급자를 방문하지 않고, 사무업무만 수행하고 가산 청구 - 가산 인력이 상근근무를 하였으나 고유업무외 다른 업무를 수행하여 월기준 근무시간 미만으로 근무시간 확인이 된 경우
	인지활동형 방문요양 가 산기준 위반	- 프로그램관리자가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음에도 프로그램관리자로 등록 후 급여비용청구 - 팀장급요양보호사가 프로그램관리자로 활동함
본부금 징수 위반	법정 본인부담금 과다징 수	- 법정 본인부담비용보다 상향한 금액을 수급자에게 징수
기타	기타 사유(기재)	- 기타 사유로 인한 부담 청구

○ 업무정지일에 따른 패널티

구분	업무 정지일	패널티
평가	30일 이하	1개 등급 하위 조정
	31일 이상 ~ 60일 이하	2개 등급 하위 조정
	61일 이상	평가 E등급
재지정	30일 이하	-5점
	30일 이상 ~ 90일 이하	-10점
	91일 이상 ~	-15점
	180일 이상	-20점

담당부서	(주)동부케어 기업부설연구소 사회서비스표준모델 공유화사업 지원팀	책임자	책임연구원 오계숙 031-225-7655(내선:1311)
		담당자	책임연구원 엽은영 031-225-7655(내선:1111)
		작성자	소 장 진영종 031-225-7655(내선:1001)

(주)동부케어 기업부설연구소